SHIN&KIM
법무법인(유) 세종

대법원 2025. 9. 4. 선고 2022도16512 판결

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,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.

1. 사안

피고인 1(회사 대표이사)과 피고인 2(변호사)는 피고인 1이 제기한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민사소송(제1 민사사건) 과정에서,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회사(공소외 2)와 그 관계자(공소외 3)의 **은행 거래내역**을 확보함.

피고인들은 이 거래내역을 **제1 민사사건의 심리 목적 외의 용도**로 사용하여,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한 **형사 고소 사건**과 **별개의 민사소송**(제2, 3, 4 민사사건, 사해행위취소, 가처분 사건 등)에 **증거자료로 제출**함.

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**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융실명법')** 및 **구 개인정보 보호법**에서 금지하는 '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'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함.

2. 원심의 판단

-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'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'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'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'에 해당한다고 봄.
- 또한 피고인들이 제1 민사사건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건들에 해당 정보를 제출한 것은 금융거래정보를 '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'한 것에 해당하며, 이를 **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**는 이유로,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**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**함.

3. 대법원의 판단

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금지규정 수범자에는 해당하지만, 그 행위의 **위법성 유무**를 판단함에 있어 **정당행위** 성립 여부를 간과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음.

가. 관련 법리

- **수범자 인정**: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구 금융실명법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'목적 외 이용 금지' 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함.
- **정당행위 법리**: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더라도, 그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소송상 주장을 증명하거나 수사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'정당행위'(형법 제20조)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(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3도3673 판결 참조). 정당행위 여부는 정보 수집 경위, 제출 목적, 제출 상대방, 정보의 성격, 침해되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.

나. 구체적 판단

- ①피고인들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'적법하게' 취득했고, ②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과의 **다른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**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은, **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상대방의 사기 혐의 등을 소명**하기 위한 **필수적인 소송행위 및 방어권 행사**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. ③제출된 정보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'필요한 증거'였고, ④정보가 제출된 곳은 법원과 수사기관으로, 각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가 유출 위험이 적으며, ⑤정보의 내용이 민감정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.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,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함.
-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위 거래내역을 제출한 행위는 **정당행위에 해당**할 여지가 충분함에도,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.

4. 대상 판결의 의의

- 이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상대방의 금융거래·개인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에 증거로 사용하는 행위는 '목적 외 이용'에 해당하지만,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'정당행위'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. 특히 정보 취득의 적법성, 사건 간의 실질적 관련성, 증거로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.
- 이 판결에 따르면, 기업들은 민사 분쟁이나 형사 사건 대응 시, 법원을 통해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**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증거로 제출**할 수 있게 됨.
- 단,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정보를 **주장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**로 제한하여야 하며, 제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 제출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 성립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.

관련구성원

이원
변호사

02-316-4406
wlee@shinkim.com

문희춘
변호사

02-316-4051
hcmoon@shinkim.com

김태훈
변호사

02-316-1697
thunkim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